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을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으로, “법 제17조”를 “법 제20조”로, “법 제11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검사수탁기관”을 각각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사수탁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수탁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사수탁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사수탁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금융거래의”를 각각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까지”를 “제18조까지”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률상 최고한도액”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정최고금액”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가목(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목 (1)(중전의 (2)) 중 “위반행위”를 “예정금액은 위반행위”로,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을 “일정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고 한다)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를 “예정금액은”으로, 같은 호 본문 중 “예정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법정최고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제2호 다목 표 외의 부분 중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를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로 하고, 별표 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4)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별표 제3호나목(1) 중 “20%이내”를 “50%이내”로 하고, 같은 목 (2) 중 “30%”를 “50%”로 하며, 같은 목 (4) 중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을 “예정금액이 다음과 같은”으로 하고, 같은 (4)에 (가),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융회사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금융회사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회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8호, 11호부터 15호까지의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회사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회사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중 위 (가)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 제38호)은 폐지한다.

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전항에서 규정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 ⑨ (생략)

제6조(검사실시)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③ (생략)

제7조(검사의 사전통지)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 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

⑥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

-----.

1. ~ 3. (현행과 같음)
4. -----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실시)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검사의 사전통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

-----.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③ (생략)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검사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
과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
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제14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
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
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
관-----
법 제15조제7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
수탁기관의 장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

-----.

1. (생략)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생략)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
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 (생략)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생략)

나.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
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거래등의 -----

다.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거래등의 -----

다. (생략)

4. 5. (생략)

② (생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5조(심의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 3. (생략)

다.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 ① -----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
-----.

② 법 제20조제3항-----

-----.

제25조(심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제18조-----

2. 3. (현행과 같음)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정최고금액”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단, 위반행위의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

(1) 예정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고 한다)로 산정한다.

(2) (현행 (3)와 같음)

(3) <삭 제>

2. -----

예정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법정 최고금액에 예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생략)

나. 감경사유

(1) 당해 금융회사등이 자체감

-----.

가. (현행과 같음)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항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4)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감경사유

(1) -----

<신 설>

* 금융회사란 특정금융정보
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타
목까지의 회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8호, 11호부
터 15호까지의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회사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표
시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회사란 특정금융정보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중 위 (가)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총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
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
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
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